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 학원법 개정을 통해 레벨테스트·비교서열화 금지, 만 3세 미만 인지 교습 금지, 위반 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영유아 발달권 보호
- 5세 이음교육, 독서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수요 맞춤형 돌봄 기반 확대로 공교육 신뢰 회복
- 학계·전문가 기반 교육 정보 제공, 과대·허위 광고 규제 범위 확대, 보호자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한 보호자 지원 강화
- 【관련 국정과제】 101-3.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1일(수)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4세·7세 고시' 현상 등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으로 인한 발달 저해, 정서적 부담 가중 등 아동학대적 양상까지 나타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 * 시험을 통한 비교·서열화, 한국어 사용 제한, 장시간 주입식 수업 및 신체활동 구속 등
- ** '24.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 결과 : ▲3개월 총합: 8,154억 원(7~9월), 1인당 월평균 33.2만 원, ▲참여율 47.6% (연령별 참여율: 2세 미만 24.6% < 3세 50.3% < 4세 68.9%, < 5세 81.2%)
- ※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 : ('19.) 615개 → ('25.) 814개, 32%↑, 서울 229개,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 월평균 사교육비 : 154.5만 원('24.)

교육부는 그간 영유아 사교육 대응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25.9.15.)하고, 학부모·교육 전문가·현장 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25.8.14.)과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기본 원칙·아동 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등 정책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 *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기반 유아대상 학원 규제 방안 마련 등
- ** ▲(4대 원칙)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아동 권리) 안전하게 보호받고, 잠재력을 실현하며 자신의 삶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권리

이번 방안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 합리적 규제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정상화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합리적 규율 마련

공교육과 사교육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이 존중되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본법」에 '취학 전 아동의 발달과 정서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개정하여 학원 설립·운영자에게도 아동 권리보호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학원법 개정 시 아래와 같이 '레벨테스트 금지', '유해교습행위 금지', '과대·허위광고 금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계획*이며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개정할 예정이다.

※ 「교육기본법」 및 「학원법」 개정 : '레벨테스트 금지'에 대한 「학원법」 개정 건은 국회 본회의 통과('26.3.12.), 그 외 법령 개정은 '26년 예정

레벨테스트 금지	유해교습행위 금지	과대·허위광고 금지
모집 및 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평가 금지	비교·서열화 금지, 3세미만 대상 인지 교습 및 3세이상~취학전 대상 장시간 교습 금지	광고·상담 시 객관적 근거 없는 학습효과·진학실적 강조 금지
(효과) 유아의 과도한 학습부담 및 스트레스 원천 차단	(효과) 정서적 학대 및 발달 저해 요소 제거	(효과) 학부모 불안심리 조장 및 사교육 과열 방지

'레벨테스트 금지'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평가, 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과도한 학습에 대한 유아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유해교습행위 금지'는 교과목(언어, 수리 등)의 지식 주입을 위해 강사가 주도 하는 인지 교습에 대한 제재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영아(36개월 미만)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 교습은 전면 금지하고, 유아(36개월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장시간(1일 3시간 초과, 1주 15시간 초과)의 인지 교습을 금지한다. 이는 유해교습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의 발달 저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과대·허위광고 금지’는 학습자 모집 단계에서만 아니라 수강 및 교습 관련 상담과 설명 과정에서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도 제재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 불안 심리 조장과 사교육에 대한 과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원 등의 정보공개 체계를 보완하고 과징금을 최대치로 부과(매출액 50%)하여 행정제재(과태료 1,000만 원)를 강화한다. 특히, 불법행위 상시 감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상한 증액(200만 원)하는 등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한다.

2] 질 높은 영유아기 공교육·보육 기반 조성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교육’을 확대하여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을 돕는다. 또한, 전 생애 발달의 기초가 되는 문해력 형성을 위해 유아기부터 그림책 활용 놀이 제공 등 독서교육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예술, 체육, 언어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급하고, 기관별 방과후 특색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한편, 돌봄 공백으로 인해 사교육을 이용하는 수요를 공교육 체제 내로 유도하고자 틈새돌봄 운영도 확대한다. 아침과 저녁, 방학 중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거점형·연계형 돌봄을 운영**하고, 단기간·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 보육 지원도 지속 확대하여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낮춘다.

* 방과후 특색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 (‘26) 1,000개 원 → (‘27) 1,500개 원 이상

** (국정과제 101-3-3)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확대 : (‘26) 200개 원 → (‘27.~) 300개 원 이상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및 대국민 캠페인 추진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별 사교육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과 대국민 캠페인을 연계한 참여·공감형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아교육학회·뇌신경학회·소아학회 등 전문가와 연계·협력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식 개선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채널로 확산한다.

교육·보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유아 성장·발달 단계별 보호자 교육자료*도 개발·보급해 보호자 교육을 지원한다.

* 유아(3~5세) 보호자 교육자료(우리 아이를 위한 양육 길라잡이) 연령별 디지털 콘텐츠 57편 제작(‘25) + 영아(0~2세) 부모 교육자료 추가 개발(‘26)

4]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통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대책 마련

2026년부터 부모 인식 조사 등을 포함한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초·중등 사교육비 조사와 연계해 심층 분석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영유아 사교육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가데이터의 신뢰성, 안정성,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국가승인통계 지정 추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영유아의 발달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다. 영유아기는 평생의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소중한 시간이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4년도 유아 사교육비 조사 주요 결과
 2. 국가 인권 위원회 권고 사항
 3.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인포그래픽
 4.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카드뉴스
 5.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관련 Q&A

【별첨】 2026년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담당 부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책임자	서기관	최원석 (044-203-7030)
		담당자	교육연구사	곽유미 (044-203-7032)



붙임1

2024년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

- **(총액)** 3개월(7~9월) 사교육비 총액 8,154억원
- **(참여율시간)** 사교육 참여율 47.6%, 참여유아 기준 주당 참여시간 5.6시간
- **(1인당)** 사교육 참여유아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3.2만원
※ 전체유아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5.8만원
- **(수강목적)** 예체능 및 기타 과목은 재능계발 및 진로탐색(60.3%), 일반과목 및 논술과목은 입학 준비(67.6%) 비중이 높음
※ 본조사는 시험조사이며, 연간화되지 않은 미승인 통계로 자료 이용·해석에 유의 필요

- 7~9월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원, 사교육 참여율은 47.6%, 주당 참여시간은 5.6시간으로 기관 재원 유아 3.7시간, 가정양육 유아 15.2시간

【 사교육비 이용 총액 및 참여율 】

구분	전체	기관유형별				연령별				
		기관 재원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 양육	2세 이하	3세	4세	5세	
사교육비 총액(억원)	8,154	4,671	1,869	2,802	3,483	858	1,325	2,452	3,519	
참여율(%)	47.6	50.3	37.9	71.8	37.7	24.6	50.3	68.9	81.2	
참여시간	전체	2.7	1.8	1.1	3.1	5.7	0.5	2.6	4.4	6.3
	참여	5.6	3.7	2.9	4.3	15.2	1.8	5.2	6.4	7.8

- 사교육 참여유아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2만원으로, 예체능 및 기타 과목은 월평균 17.2만원, 일반과목(국·영·수 포함) 및 논술과목은 월평균 34만원
 - (과목별 1인당 사교육비) 예체능은 취미·교양(12.7만원), 체육(12.7만원), 음악(12.2만원), 일반과목은 영어(41.4만원), 사회·과학(7.9만원), 논술 등(7.5만원) 순
 - (수강목적) 예체능 및 기타 과목은 재능계발 및 진로탐색(60.3%), 감수성함양(50.1%), 사회성발달(23.8%), 일반과목은 입학준비(67.6%), 재능계발 및 진로탐색(53.8%), 불안심리(41.0%) 순
- 가정양육 유아 17%가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에 참여하고,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 이용 총액(3개월)은 2,668억원, 참여유아 기준 월 평균 비용은 145.4만원
 -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 유형 중 영어학원 월평균 비용이 154.5만원

【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 유형별 참여유아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 】

(단위:만원)

구분	전체	유형별				
		영어학원 유치부	예능학원	놀이학원	체육학원	기타
참여유아 기준	145.4	154.5	78.3	116.7	76.7	74.7

붙임2

국가 인권 위원회 권고 사항

□ 개요

- 국가인권위는 '7세고시' 등 극단적 조기사교육 형태는 아동 인권 침해이며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선행 사교육 제한 법령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25.8.14.)

□ 주요내용

- 진정인은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인으로, 유아대상 입학시험과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침해한다며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함
-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극단적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발달과 건강을 해치고 놀이·휴식·자기표현의 시간을 박탈할 우려가 크며, 과도한 교육비 부담과 교육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현행 제도상 이를 실효적으로 파악·규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

【 권고사항 】

⇒ 교육부 장관은, 7세고시 등 극단적인 형태를 띤 조기 사교육 해소와 이를 통한 모든 아동이 건강권과 발달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조성

- ①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 ②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
- ③ 극단적 선행 형태의 외국어 읽기·쓰기 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령·지침 마련
- ④ 영유아에게 외국어 교육 숙달을 목표로 하는 과도한 외국어 학습 예방 조치 마련
- ⑤ 놀이 탐색 중심의 영유아기 교육 강화 등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 과도한 조기 학습 사교육의 그늘

영유아기 발달에 부적합한 경험

-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과잉 인지 학습 강요
-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한 창의성 저하
- 놀이와 상호작용 기회 박탈



부모 불안과 부담

- 사교육비 과다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 경쟁 심화에 따른 불안 및 비교
- 육아 스트레스 및 정보 불균형



공교육이 든든해집니다

- 초등학교 적응지원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5세 이음교육 확대
- 문해력의 기초 형성을 위한 독서교육 강화
- 특색있는 방과후 운영 활성화



아이들을 지킵니다

- 지필·구술 평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레벨테스트 금지, 비교 서열화 행위 금지
- 36개월 미만 인지교습 금지, 36개월 이상 1일 3시간 1주 15시간 이내
- 국민 참여형 감시 체계 운영



부모님을 지원합니다

- 허위·과대 광고 규제를 상담·설명 단계까지 확대
- 영유아기 사교육 영향에 대한 과학적 정보 제공
- 보호자 교육자료 개발·보급

기대효과



영유아

건강한 신체·정서·사회성 발달 주도성 및 창의성 신장 행복한 성장 기회 확대



학부모

양육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공교육 신뢰 회복 및 불안 해소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국가·사회

사교육 과열 경쟁 완화 출발선 단계의 교육 격차 감소 미래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교육부

교육부

영유아기 발달에 부적합한 경험

- 과도한 오점 시험: 4세 고사·7세 고사로 불리는 유아 대상 입학시험
- 비교·서열화: 시험 평가를 아이들을 잘 세우는 관행
- 정서적 스트레스: 장기간 주입식 수업으로 인한 과도한 정서적 부담

2/8

교육부

부모의 불안과 부담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경쟁심리

공교육 불신으로 인한 사교육 의존

고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 심화

3/8

교육부

영유아 시기의 발달권과 놀 권리를 잃고 조기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

사교육비 부담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지쳐가는 부모들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4/8

교육부

방안 1 아이들을 지킵니다

- 레벨테스트 금지: 지필·구술 평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레벨테스트, 비교·서열화 행위 금지
- 인지교습 제한: 36개월 미만 인지교습 금지, 36개월 이상 1일 3시간 1주 15시간 이내
- 위험 서제재 강화: 최대 수준의 과징금 도입, 국민 참여형 신고·감시 체계 운영

5/8

교육부

방안 2 공교육이 든든해집니다

- 이음교육: 유치원·어린이집 5세 이음교육 확대로 초등학교 적응지원
- 독서교육: 평생 문해력의 기초 공교육에서 제공
- 방과후 프로그램: 예술·체육·언어 등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6/8

교육부

방안 3 부모님을 지원합니다

- 과학적 교육 정보 제공: 학습·전용기 기반 (N·발달, 소아학위 등)
- 과대·허위광고 규제: 규제 범위 확대 (모집·상담·상담대행)
- 보호자 교육자료 개발·보급: 영유아 상담 발달 단계별 (2주~)

부모님을 지원합니다

7/8

교육부

영유아기의 소중한 시간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함께 지켜가겠습니다.

교육부

8/8

Q1. (본조사) '25년 유아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없나요?

A. '24년 시험조사를 시작으로, '25년에는 시험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층 연구를 추진하여 국가데이터에 부합하도록 조사설계 고도화 등 준비 작업을 하였습니다.

- 현재, 8.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본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26년도 유아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27년 3월경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본조사 일정) 조사기관 선정(4월) → 조사준비(조사표 설계, 표본추출 등 4~8월) → 본조사(9~10월) → 결과 집계 및 분석(11~12월)

Q2. (본조사) '25년에는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분석연구 결과는 없나요?

A. '25년에 실시한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분석 연구는 '26년 본조사 실시를 위해 시험조사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고, 조사주기 및 방법론 등 통계 생산체계 전반을 진단한 것입니다.

- 연구 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Q3. (레벨테스트) 레벨테스트가 금지된다고 하는데, 지필평가가 아닌, 구술평가 방식의 시험·평가도 제재 대상인가요?

A. 단순히 지필 평가뿐만 아니라, '구술 평가' 방식이라도 사실상 **아이의 지식 습득 정도를 측정**하고 정답·오답을 가려내는 행위라면 금지된 시험으로 간주합니다.

- 뿐만 아니라 타 기관의 학습 이력이나 공인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등 우회적인 평가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제한할 예정입니다.

Q4. (기본권 침해) 학원규제가 영업권,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견해에 대한 입장은?

A. 영유아는 교습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도 고통을 호소하거나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가장 취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 직업선택의 자유와 부모의 자녀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알고 있으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켜줘야 할 책임** 또한 있기 때문에 **영유아의 행복추구권, 건강권**과 같은 헌법적 가치 보호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위반 확인】

(전원재판부 2008 헌마 635, 2009.1.29.)

학원에서의 교습은 보장하면서 **심야에 한하여 교습시간을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한 시간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인 반면,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 이므로 법익 균형을 충족함.

이 사건 조항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Q5. (시간제한) 3세 이상에 대해 인지교습 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제한한 기준은 무엇인지?

A. 교습 시간 제한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설정하였습니다.

- '2019 개정 누리과정'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운영되지만, 이 중 **2시간 이상의 충분한 놀이 시간을 확보**해야하고 휴식과 상호작용 등 발달에 적합한 필수적인 경험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 뇌의 인지 기능이 미성숙한 취학 전 유아에게 **초등 저학년의 하루 정규 학습량(4~5교시)**을 뛰어넘어 인지교습을 받게 하는 것은 유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Q6. (인지교습 금지) 3세 미만을 기준으로 인지교습을 금지한 이유는?

A. 3세 미만 영아는 오감과 신체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생존과 감각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과도한 인지교습은 교육이 아니라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유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 (국가표준교육과정) 만3세 미만 영아는 **안정적 애착, 감각 발달** 등 '돌봄'에 기반한 **표준보육과정** 만3세 이상 유아에게는 **누리과정**에 의한 공공보육교육 운영
- 국가인권위 또한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은 아동학대로** 판단하며 **비정상적인 선행 형태의 교육을 제한**하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사회 조성에 대해 권고한 바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권고 사항 요약 (‘25.8.14) 】

- ①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기반 유아대상 학원 규제 방안 마련
- ② **극단적 선행 형태의 외국어 읽기·쓰기 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령·지침 마련
- ③ 놀이 탐색 중심의 영유아기 교육 강화, 유아사교육 실태조사 등

-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 **아동의 발달권 등 4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1991년 비준) 요약 】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원칙>

- ①비차별의 원칙 ②아동최선의 원칙 ③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④생존과 발달의 권리
- ⑤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아동의 4대 기본 권리>

- ①**생존권** ②**보호권** ③**발달권** ④**참여권**

Q7. (과징금) 새롭게 도입되는 '과징금'은 기존의 제재 방식과 어떻게 다르며, 왜 도입하게 되었나요?

A. 현재 학원법상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에 불과하여 **고액 학원의 수익 대비 제재력이 미미**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 이에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 교습을 통해 얻는 기대 수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Q8. (독서교육) 유치원 어린이집 독서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독서교육은 책 읽기, 책 활용 놀이를 통해 전 생애 발달의 기초가 되는 문해력을 포함한 유아의 통합적 발달을 지원합니다.

- 첫째, **독서중점 시범기관** 통하여 유아가 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독서 중심 환경을 구성하고,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즐거운 책 읽기·책 놀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 둘째, **지역별 도서관 연계**를 통하여 유아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도서관을 지원하여 독서교육 기회를 지역사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셋째, 이와 더불어 교원의 독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지원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하여 유아 독서교육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지역·기관의 차이 없는 생애 초기 독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Q9. (인식개선) 부모대상 인식개선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 A. 정부는 영유아 사교육 인식개선을 위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보 제공과 현장 중심의 실행 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 우리부는 먼저, 영유아 발달 단계 및 뇌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 부모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겠습니다.
 - 둘째, 지역별 영유아 사교육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과 대국민 캠페인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셋째, 교사, 전문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협력 구조를 마련하여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